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 박물관·미술관 설립 등 우선 지원〉
■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305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인구감소지역 박물관·미술관 설립 등 우선 지원(안 제24조)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광규택의원 등 15인
2. 발 의 일 : 2026. 7. 30.
3. 회 부 일 : 2026.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활성화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에는 운영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여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4조).

III. 검토의견

1. 인구감소지역 박물관·미술관 설립 등 우선 지원(안 제24조)

개정안은 국가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제1항), 인구감소지역의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임(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경비 보조 등) <신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는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 이 경우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

현 행	개 정 안
②·③ (생 략)	<u>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u>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3조¹⁾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박물관·미술관, 공립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및 대학박물관·미술관으로 구분하고 있음.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과 [별표 2]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²⁾되므로, 건립에 있어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나 의무적 등록 대상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182.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27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으로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받을 수 있음.³⁾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설립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⁴⁾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을 하게 되면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이 국가는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과,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5년 기준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등록할 수 있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0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인구감소지역⁵⁾ 89개 기초자치단체의 박물관(261개) 및 미술관(67개)의 수는 328개로 전체 230개 기초자치단체 박물관(918개) 및 미술관(290개)의 수인 1,208개 대비 27.1%에 불과한 상황임.

< 인구감소지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수 >

구분	박물관 수				미술관 수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부산광역시 동구	-	-	-	-	-	-	-	-
부산광역시 서구	2	1	-	1	1	-	-	1
부산광역시 영도구	3	2	-	1	-	-	-	-
대구광역시 남구	-	-	-	-	1	-	-	1
대구광역시 서구	-	-	-	-	-	-	-	-
대구광역시 군위군	2	1	-	1	-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4	3	1	-	3	-	3	-
인천광역시 옹진군	-	-	-	-	-	-	-	-
경기도 가평군	-	-	-	-	4	-	4	-
경기도 연천군	2	1	1	-	-	-	-	-
강원도 고성군	3	2	1	-	3	1	2	-
강원도 삼척시	4	3	1	-	-	-	-	-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구분	박물관 수				미술관 수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강원도 양구군	5	5	-	-	1	1	-	-
강원도 양양군	1	1	-	-	1	-	1	-
강원도 영월군	21	9	12	-	1	-	1	-
강원도 정선군	4	1	3	-	1	-	1	-
강원도 철원군	-	-	-	-	-	-	-	-
강원도 태백시	2	2	-	-	-	-	-	-
강원도 평창군	3	1	2	-	-	-	-	-
강원도 홍천군	2	2	-	-	-	-	-	-
강원도 화천군	2	2	-	-	-	-	-	-
강원도 횡성군	1	-	1	-	-	-	-	-
충청북도 괴산군	3	2	-	1	-	-	-	-
충청북도 단양군	2	1	1	-	-	-	-	-
충청북도 보은군	2	1	1	-	-	-	-	-
충청북도 영동군	4	2	2	-	-	-	-	-
충청북도 옥천군	2	1	1	-	-	-	-	-
충청북도 제천시	6	4	2	-	-	-	-	-
충청남도 공주시	12	4	6	2	1	-	1	-
충청남도 금산군	4	3	1	-	-	-	-	-
충청남도 논산시	1	1	-	-	-	-	-	-
충청남도 보령시	2	2	-	-	1	-	1	-
충청남도 부여군	6	4	1	1	-	-	-	-
충청남도 서천군	2	2	-	-	-	-	-	-
충청남도 예산군	7	2	5	-	1	-	1	-
충청남도 청양군	1	1	-	-	-	-	-	-
충청남도 태안군	4	3	1	-	-	-	-	-
전라북도 고창군	2	2	-	-	-	-	-	-
전라북도 김제시	2	1	1	-	1	1	-	-
전라북도 남원시	1	1	-	-	2	1	1	-
전라북도 무주군	2	2	-	-	1	1	-	-
전라북도 부안군	3	2	1	-	2	-	2	-
전라북도 순창군	2	2	-	-	1	1	-	-
전라북도 임실군	1	1	-	-	-	-	-	-
전라북도 장수군	1	1	-	-	1	-	1	-
전라북도 정읍시	4	4	-	-	1	1	-	-
전라북도 진안군	2	2	-	-	-	-	-	-

구분	박물관 수				미술관 수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6	3	3	-	2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3	3	-	-	5	-	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	-	1	1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2	1	1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5	1	4	-	2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2	1	1	-	2	1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6	6	-	-	2	2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2	-	2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5	3	2	-	3	1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2	2	-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2	2	-	-	1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3	2	1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2	1	1	-	7	1	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	-	-	2	1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5	2	3	-	1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1	-	1	-	5	1	4	-
경상북도 고령군	2	2	-	-	-	-	-	-
경상북도 문경시	7	6	1	-	-	-	-	-
경상북도 봉화군	2	2	-	-	-	-	-	-
경상북도 상주시	6	6	-	-	-	-	-	-
경상북도 성주군	1	1	-	-	-	-	-	-
경상북도 안동시	11	5	5	1	1	-	1	-
경상북도 영덕군	-	-	-	-	-	-	-	-
경상북도 영양군	1	1	-	-	-	-	-	-
경상북도 영주시	3	2	1	-	-	-	-	-
경상북도 영천시	3	-	3	-	1	-	1	-
경상북도 울릉군	1	1	-	-	-	-	-	-
경상북도 울진군	1	1	-	-	1	-	1	-
경상북도 의성군	3	2	1	-	-	-	-	-
경상북도 청도군	1	1	-	-	1	-	1	-
경상북도 청송군	1	1	-	-	1	1	-	-
경상남도 거창군	1	1	-	-	-	-	-	-
경상남도 고성군	6	5	1	-	-	-	-	-
경상남도 남해군	2	2	-	-	1	-	1	-
경상남도 밀양시	6	1	4	1	-	-	-	-

구분	박물관 수				미술관 수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경상남도 산청군	7	5	2	-	-	-	-	-
경상남도 의령군	1	1	-	-	-	-	-	-
경상남도 창녕군	3	3	-	-	-	-	-	-
경상남도 하동군	2	2	-	-	-	-	-	-
경상남도 함안군	1	1	-	-	-	-	-	-
경상남도 함양군	1	1	-	-	-	-	-	-
경상남도 합천군	3	1	2	-	-	-	-	-
소 계	261	168	84	9	67	16	49	2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5 전국 문화기반 시설총람」

특히,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원도 철원시, 경상북도 영덕군의 경우 관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이 없는 상황임.

이와 같은 인구감소지역의 문화시설 부족은 해당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청년층 등의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문화향유권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전시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 비용과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또한,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한 생활인구⁶⁾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산에 있어서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세제 감면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⁷⁾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부합하는 측면의 입법임.

다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 지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안 제 24조제1항 전단 국가의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근거 규정이 현재의 국가보조금 예산 편성·관리체계와 충돌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27년 예산안 홍보자료(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 2026. 9, p. 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2026. 8.

안 제24조제1항의 입법 실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지방 이양 사업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법 취지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립 박물관·미술관 경비 지원 우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박물관·미술관 경비 지원은 균형 있는 문화향유 기회 보장과 더불어 지속 가능성, 소장품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보조 의무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수정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와 함께 보조금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 및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을 우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255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84